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2서식] <개정 2018. 9. 27.>

##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
| 환자<br>본인                  | 성명   | 연락처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|         |
| 신청인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| 환자와의 관계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| 연락처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|         |
| 열람<br>및<br>사본<br>발급<br>범위 | 의료기관 명칭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료기간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 사유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 범위 (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)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시) 진료기록부 사본, 처방전 사본, 수술기록 사본,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의 사본, 방사선 사진(영상물 포함), 간호기록부 사본, 조산기록부 사본, 진단서 사본,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등 |         |

본인(또는 법정대리인)은 위에 적은 신청인( )이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본인(또는 법정대리인)

(자필서명)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의3서식] <개정 2017. 6. 21.>

##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수임인 | 성명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|
|     | 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 | 위임인과의 관계 |
|     | 주소            |          |
| 위임인 | 성명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|
|     | 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 |          |
|     | 주소            |          |

위임인은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「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위임인

(자필서명)

##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
|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확인자<br>(신청자) | 성명  | 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 |
|              | 환자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환자           | 성명  | 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 |
| 확인사항         | 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 |                |

본인(확인자)은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및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

상기 환자( )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본인(확인자)

(자필서명)

### 유의사항

상기 확인서는 아래의 경우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자인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작성합니다.

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
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의3 제3항 [별표 2의2]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